

심 사 보 고 서

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북수산물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61
----------	-----

2025. 4. 30.(수)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종갑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4월 22일

(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종갑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북수산물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관람·전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시·홍보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충북수산물파크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수산물파크의 전시·홍보 기능에서 수산동식물 뿐만 아니라 그 외 자연 생태 관련 시설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함 (안 제4조)
- 인용 조례명의 오기 정비 (안 제2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발의배경

- 충북수산파크는 수산동식물 관련 전시·홍보 기능을 통해 도민과 방문객에게 수산자원의 가치와 생태적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
- 최근 도민들의 여가 활동 다양화와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수산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생태 자원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
- 이에 수산동식물에 한정되어 있던 전시·홍보 기능을 자연생태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, 충북수산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관람·전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- 이와 더불어 본 조례에 인용된 타 조례명의 오기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

나. 개정안 주요 조문 검토

- **안 제4조**는 수산동식물에 한정되어 있던 전시, 홍보기능을 자연생태 전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충북수산파크의 공익적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고, 도민의 생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,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적절한 개정이라 보여짐
- **안 제27조**는 인용된 조례명의 오기를 바로잡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충북수산파크에 수산동식물 뿐만 아니라 식물·곤충·습지생물 등 다양한 자연생태 자원에 대한 전시 및 홍보를 함으로써 충북수산파크의 운영 다양성 확보와 방문객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
- (타당성) 조문 표현상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개정하였으며,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-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(종합의견) 이번 개정을 통해 충북수산파크의 공공 기능과 활용 범위를 넓히고, 도민이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,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, 조례 개정의 필요성·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961호
의 결 연 월 일	. . . (제 회)

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종갑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4월 11일

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종갑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6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4월 11일

발 의 자 : 이종갑, 김꽃임, 이옥규, 박경숙
유재목, 이의영, 임병운

1. 제안이유

- 충북수산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관람·전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시·홍보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충북수산파크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수산파크의 전시·홍보 기능에서 수산동식물 관련뿐 아니라 그 외 자연생태 관련 시설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함 (안 제4조)
- 인용 조례명의 오기 정비 (안 제2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5. 4.
- 협 의 :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
-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호 중 “수산동식물”을 “수산동식물 및 그 외 자연생태”로 한다.

제27조 중 “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능) 수산파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 략) 6. 수산동식물 관련 전시·홍보시설 운영 관리 7. (생 략)	제4조(기능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수산동식물 및 그 외 자연생태----- 7.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	제27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----- ----- -----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
가. 소류지(소유지)·보(湫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
다. 농업자재의 관리

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
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
바. 농가 부업의 장려

사. 공유림 관리

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자. 가축전염병 예방

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
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충북수산물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북수산물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관람·전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·홍보 시설 확충사업

2. 비용 발생요인

- 수산물파크 내 장수풍뎅이 조형물 이전 설치 및 충북수산물파크 활성화 5개 사업 추진·전시 등에 따른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안 제4조(기능)
 - 수산물파크의 전시·홍보 기능에서 수산동식물 관련뿐 아니라 그 외 자연생태 관련 시설까지 포함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1) 추계기간 :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
- 2) 자연생태 관련 전시·홍보시설의 설치

나. 추계결과

1) 산출과정

- 장수풍뎅이 조형물 이전 설치 : 60,000천원
- 충북수산물파크 활성화 사업(5개사업) : 1,250,000천원

- 2) 산출결과 :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1,310,000천원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 천원)

구 분		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
총계		1,310,000	1,310,000	0	0	0	0
장수풍뎡이 조형물 이전설치		60,000	60,000	0	0	0	0
충북수산물 크 활성화 사업 (5개사업)	침단연못 리모델링	800,000	800,000	0	0	0	0
	안전성검사실 이전	200,000	200,000	0	0	0	0
	아쿠포닉스 이전	100,000	100,000	0	0	0	0
	잔디마당 조성	100,000	100,000	0	0	0	0
	사무동 리모델링	50,000	50,000	0	0	0	0

6. 작성자 :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재정